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환수국고보조금미반납

소 관 기 관 무안군

조 치 기 관 무안군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0년 톱밥표고배지시설 지원사업”(총사업비 995,000,000원: 국비 199,000,000원, 군비 199,000,000원, 용자 199,000,000원, 자부담 398,000,000원) 보조사업자인 ㉠(대표 CT, 이하 “㉠”)이라 한다)이 2015. 4. 14.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¹⁾되자 2016. 9. 7.과 같은 해 10. 5. 2회에 걸쳐 국비와 군비 보조금 계 398,307,260원²⁾을 환수하여 이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조 관련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 처리하고, 같은 기준 제6조 관련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1) 광주지방법원이 2015. 4. 14. ㉠의 항소[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1심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를 기각하자, 위 관서는 같은 해 7. 31. ㉠에 보조금 398,000,000원 반환을 통지

2) 2016. 9. 7. 348,000,000원, 같은 해 10. 5. 50,307,260원(공탁금 이자 307,260원 포함)을 각각 환수하는 등 계 398,307,260원(국비 199,000,000원, 군비 199,000,000원, 공탁금 이자 307,260원)을 반환받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처리한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2016. 9. 7.과 같은 해 10. 5. 2회에 걸쳐 “2010년 톱밥표고 배지시설 지원사업”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199,000,000원을 반환받은 후³⁾ 이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 6. 이를 위 관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다.⁴⁾

그 결과 위 관서는 2019. 5. 8. 감사일 현재까지 199,000,000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보조금 교부기관인 산림청에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 받고는 2019. 9. 5.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201,362,150원(이자 2,362,150원 포함)을 산림청에 반납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국고보조금 미반납과 관련하여 산림청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여 시정완료하였고, 앞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무안군이 2019. 9. 5. 국고보조금 201,362,150원을 산림청에 반납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3) 군비 199,000,000원도 같이 반환받았음

4) 무안군 ◎과의 위 사업담당자 CU은 위 398,000,000원을 모두 무안군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였고, 무안군 ◎과 과장 CV(2019. 6. 30. 정년퇴직)에게 결재를 받음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무안군수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